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5. 4. ~ 5. 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10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서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56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의자 : 서정진 · 장숙희
오행숙 · 이복남 의원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순천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 ~ 3조)
- 의안 제출시기, 형식, 의결기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 의안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 체결 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 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의무부담 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당 사무의 처리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의안을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담당부서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 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국·소·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4급이상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위촉관련분야 회의 때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시행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4. 지방행정조정,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1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8.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19. 공무원 및 시민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시장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